

약관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: SH 명품 장기주택마련저축 글로벌 ETF 재간접투자신탁 1호
 Tops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1호
 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호

2. 시행일 : 2008. 10. 21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- ◇ 변경 사유 :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변경
- 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만 18 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「소득세법」 제 9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1 주택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소유자	만 18 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. <u>1.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</u> 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(이하 이조에서 “국민주택규모의 주택”이라 한다)으로서 가입 당시 「소득세법」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(이하 이조에서 “기준시가”라 한다)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u>